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4
------	-----

제출년월일: 2005. 01. 10.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관련법규 명칭변경 및 2005년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
어 간결화 함(안 제2조제2항)
- 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함(안 제3조제1항)
- 다.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추진주
체 및 참가업체)들도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함(안 제15조의2조)
- 마.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
이 있으므로 명확화 함(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련공문 : 경상남도 세정과 - 8785호(2004.11.01) '05지방세감면조례
개정조례표준안, 세정과 - 6872(2004.09.01)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안,
세정과 - 10178(2004.12.22) 자동차세 감면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4 - 421 호

4. 본문 : 붙임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규정은 2005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 2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험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p>

현 행	개 정 안
	<p><u>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u></p> <p><u>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p> <p><u>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u></p> <p><u>제34조(시행규칙) (현행33조와 같음)</u></p> <p><u>제33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u></p> <p><u>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u></p>
<u>제33조(시행규칙) (생 략) (신설)</u>	